

의안번호	2200830
의 퇴 인	이학영의원
회 답 일	2024. 8.22.
추 계 번 호	24D1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경우 감면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00만원, 2029년 2,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100만원(연평균 2,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조정(안 제51조제6항)	13	16	19	24	29	101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6항 (진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1조제6항(진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¹⁾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이하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와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이하 “재해부상군경 배우자”)이며,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74세까지의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와 재해부상군경 배우자를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에 65세 이상 74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경우 위탁병원 진료행태(수진횟수, 진료단가)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60% 감면대상)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최근 5년간의 위탁병원 진료현황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현행법 제51조(진료)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조정(안 제51조제6항)

- 개정안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진료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대상자를 추정 한 후 위탁 병원의 연간수진횟수 및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출
 - (대상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는 65세에서 74세까지의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와 재해부상군경 배우자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및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수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인 65세에서 74세까지 인원은 2024년 6월 기준 해당 연령대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2]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및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115	147	162	187	211	16.4%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61	72	80	88	104	14.3%
합 계	176	219	242	275	315	1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연령별 현황(2024. 6. 기준)

(단위: 명)

	65세 미만	65세~74세 (A)	75세 이상	합 계 (B)	65세~74세 까지 비율(A÷B)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176	9	33	218	4.1%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21	27	65	113	23.9%
합 계	197	36	98	331	10.9%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4]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재해사망군경 배우자(A)		286	333	387	451	524
재해부상군경 배우자(B)		136	155	177	203	232
65~74세 인원 비율	재해사망군경 배우자(C)	4.1%	4.1%	4.1%	4.1%	4.1%
	재해부상군경 배우자(D)	23.9%	23.9%	23.9%	23.9%	23.9%
65~74세 인원	재해사망군경 배우자(E=A×C)	12	14	16	19	22
	재해부상군경 배우자(F=B×D)	32	37	42	48	55
합계(E+F)		44	51	58	67	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간 수진횟수) 유사사례로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의 2023년도 수진횟수(입원 2.3회, 외래 13.4회)를 적용
- (1회당 진료단가) 유사사례로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의 2023년도 진료비 단가(입원 33,333원, 외래 14,154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추정

[표 5]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60% 감면대상) 위탁병원 진료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입원	진료연인원(명, A)	460	237	49	77	216	-17.2%
	의료지원대상자(명, B)	57	75	79	86	96	13.9%
	1인당 진료횟수(회, A/B)	8.07	3.16	0.6	0.9	2.3	-27.3%
	1회당 진료비(원, C/A)	26,087	16,878	58,816	18,260	33,333	6.3%
	총진료비(백만원, C)	12	4	3	1	7	-12.0%
외래	진료연인원(명, D)	883	766	632	650	1,284	9.8%
	의료지원대상자(명, E)	57	75	79	86	96	13.9%
	1인당 진료횟수(회, D/E)	15.5	10.2	8.0	7.6	13.4	-3.6%
	1회당 진료비(원, F/D)	11,325	14,360	17,549	17,860	14,154	5.7%
	총진료비(백만원, F)	10	11	11	12	18	16.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 및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표 6]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A, 명)		44	51	58	67	77	
연간 수진횟수(B, 회)	입원	2.3	2.3	2.3	2.3	2.3	
	외래	13.4	13.4	13.4	13.4	13.4	
1회당 진료단가(C, 원)	입원	37,680	40,061	42,593	45,284	48,146	
	외래	15,823	16,731	17,690	18,704	19,776	
총진료비(A×B×C, 백만원)	입원	4	5	6	7	8	
	외래	9	11	14	17	20	
	합계	13	16	19	24	29	101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